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6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5일

발 의 자: 이용균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 경, 김성준, 김영철,
김재진, 남궁역, 박승진,
박중화, 서준오, 송도호,
이영실, 이원형, 임규호,
임종국, 최재란, 한 신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도시공원에서 개최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공익적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호의 범위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제2항 신설).
-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(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).
- 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·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(안 제22조제2항제2호 신설).
- 라.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·예술·체험·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(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·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
3.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·예술·체험·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금지 행위 적용대상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2조(금지 행위 적용대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·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3.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·예술·체험·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